

광양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 보고

의안 번호	4335
----------	------

2025. 9. 8.
총무위원회

1. 심사 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: 2025. 8. 29. 정구호 의원

나. 회부 일자: 2025. 8. 29. 회부

다. 상정 일자: 제341회 광양시의회 임시회(2025. 9. 8.) 상정,
“수정의결”

2. 제안 요지

가. 제안 이유

-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 등에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광양 시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에 이바지하고자 함.

나. 주요 내용

-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(안 제1조~제2조)
- 시장의 책무와 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에 관한 사항 (안 제3조~제4조)
- 우선주차구역 설치 기준·방법 및 이용에 관한 사항 (안 제5조~제6조)
- 우선주차구역의 운영 권고 및 위반차량 조치에 관한 사항 (안 제7조~제8조)

3. 검토 의견

-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 「국가보훈 기본법」,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

지원에 관한 법률」, 「주차장법」 등에 근거하여, 광양시 관내 공공 및 다중이용시설에서 국가유공자 등에 주차 편의를 제공, 국가유공자 예우 및 광양 시민의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,

- 본칙 총 8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 본칙에는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~제2조), 시장의 책무와 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(안 제3조~제4조), 우선주차구역 설치기준·방법 및 이용(안 제5조~제6조), 우선주차구역의 운영 권고 및 위반차량 조치(안 제7조~제8조)를, 부칙에는 이 조례 시행일을 규정하였음.
- 이 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에 주차 편의를 제공, 국가유공자 예우 및 광양 시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며, 상위 법령이나 다른 조례와 비교해 보았을 때, 내용이나 조문 체계, 형식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생각함.
- 다만, 주차단위구획 30개 기준의 경직성보다는 점진적으로 지역 실정·이용 실태를 반영하여 탄력적 기준으로 조정하는 것이 국가유공자 등 실질적 편의 증진 및 제도의 취지를 실현하는 데 더 효과적일 것으로 보임.

4. 질의 및 답변 요지: 회의록 참조.

5. 심사 결과: **수정의결**(출석위원 6명)

※ 수정 이유 및 내용은 수정안 참고

6. 소수의견의 요지: 해당 없음.

- 붙임
1. 광양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 2. 광양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광양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4335-1
----------	--------

제안연월일 : 2025. 9. 8.
제안자 : 총무위원장

1. 수정 이유

- 부족한 공영주차장 여건에 맞추어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을 변경함.

2. 수정 내용

- 안 제5조제1항제1호 본문 중 “30개”를 “50개”로 수정함.

광양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광양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5조제1항제1호 본문 중 “30개”를 “50개”로 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제 정 안	수 정 안
<p>제5조(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방법) ①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.</p> <p>1. 「주차장법」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<u>30개</u>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한다. 다만, 주차장 설치 규모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.</p> <p>2. (생략)</p> <p>②·③ (생략)</p>	<p>제5조(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방법) ①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----- <u>50개</u> ----- ----- -----.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·③ (현행과 같음)</p>

(제정안+수정안)

광양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광양시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국가유공자 등”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.

가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

나.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

다.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

라.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

마.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5·18민주유공자 본인

바.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

사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에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 판정자

2. “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(이하 ‘우선주차구역’이라 한다)”이란 국가유공자의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.

제3조(시장의 책무) 광양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을 촉진하기 위해 적절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.

제4조(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)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국가유공자 등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주민들의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경심을 고취하기 위해 우선 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.

1. 광양시 본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
2. 광양시가 설치·관리하는 공공시설

② 시장은 「주차장법」의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또는 다중이용시설에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.

제5조(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방법) ①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.

1. 「주차장법」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~~30~~5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한다. 다만, 주차장 설치 규모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.
2.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,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.

② 우선주차구역 바닥면에는 별표에 따른 주차구획 표시를 하고,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별표의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.

③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안내표지판 제작과 유지·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시설의 관리기관 또는 운영부서에서 부담하고, 이를 적정하게 유지·관리하여야한다.

제6조(우선주차구역의 이용) ①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하려는 국가유공자 등은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.

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제1항에 따른 신분증서 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.

제7조(우선주차구역의 설치·운영 권고) 시장은 병원, 문화·체육시설 등 국가유공자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의 주차장 설치자에게 우선주차구역의 설치·운영을 권고할 수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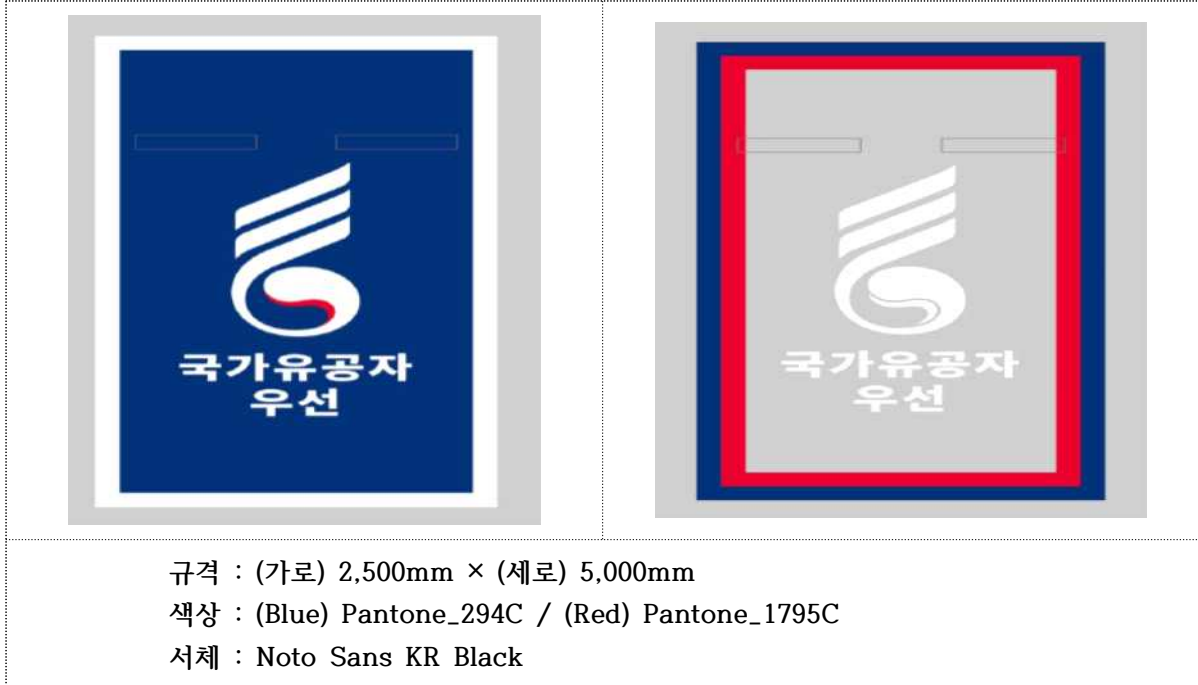
제8조(위반차량 조치) 시장은 우선주차구역에 국가유공자 등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

1. 바닥면 도안



2. 안내표지판 도안

